

최신 중국 세법 및 기업청산

2020. 05

목차

- 1 **개인소득세**
- 2 **최신 기업소득세 및 증치세 세법개정**
- 3 **코로나 관련 세무 지원 정책**
- 4 **기업청산**

1. 개인소득세

1. 종합소득 (세율 3%~45%) - 월별 예납신고, 연말 정산(익년 3월 1일~6월 30일)

- 급여소득,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사용비소득 포함
- 과세표준=총급여액-면세소득-비용공제-특별 공제-특별 부가공제(비용공제: 60,000 위안/년, 특별 공제: 사회보험, 주택공적금, 특별부가 공제)
- 연도보너스와 경제보상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산방법 적용(2021년 12월 31일 전)
- 외국인의 주택보조금, 식비, 자녀교육비 등 보조금은 면세 가능(2021년 12월 31일 전), 2022년부터 특별 부가공제 항목 적용

■ 종합소득 세율 및 계산방법

과세표준(위안)	세율(%)	속산공제수
36,000위안 미만	3	0
36,000~14,4000	10	2,520
144,000~300,000	20	16,920
300,000~420,000	25	31,920
420,000~660,000	30	52,920
660,000~960,000	35	85,920
960,000위안 이상	45	181,920

■ 특별 부가공제 항목 내용

구분	공제기준	조건
자녀교육비	1000위안/월	3세 이상 자녀의 교육비
계속교육비	학력 교육: 400위안/월 직업 관련 교육: 3600위안	학력 교육: 동일 학력 교육비용의 공제기한: 48개월까지 직업 관련 교육: 관련 증서를 취득하는 연도에 3600위안 공제
큰 병 의료비	연간 80,000위안을 한도로 공제 가능	개인 부담 비용 15,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 연간 확정신고 시 8만위안 한도 내에서 실비 공제.
주택 대출이자	1000위안/월	첫 주택만 20년 동안 향유 가능,
주책 임대료	직할시, 성(省)-1500위안/월 인구가 100만명을 초과하는 도시-1100위안/월 인구가 100만명 미만 도시 800위안/월	납세자 및 그의 배우자는 대출이자와 임대료 중 한가지만 공제 가능
60세 이상 부모 부양비	2000위안/월	납세자 및 그의 배우자는 대출이자와 임대료 중 한가지만 공제 가능

중화인민 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참고.

1. 개인소득세 (계속)

◆ 외국인 개인소득세 면제대상

	면제대상	비고
1	주택보조, 식대보조, 세탁비용	처음으로 상기 보조를 취득하거나 보조금액과 지급방식에 변동이 있는 다음 달에 급여에 대한 개인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
2	이사비용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중국경내 기구와 장소에서 이사비용의 명의로 매월 혹은 정기적으로 외국국적인원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급여소득에 속하며 개인소득세를 징수
3	중국경내 혹은 해외 출장비용	출장 시 교통비, 숙박비용의 세금계산서(복사본) 과 기업의 출장 관련 계획 자료 를 제공하여 주관세무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 면세가 가능하다.
4	친척방문 비용	외국국적인원의 중국 고용자와 그 가족 소재지(배우자 혹은 부모 주소) 간의 교통비용(매년 2차 이내) 에만 제한된다.
5	언어 교육비와 자녀 교육비	-

상기 면제대상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관련 유효 증빙문건(세금계산서, 증명서 등)을 비치.

상기 면제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되며 그후에는 특별 부가 공제사항을 적용한다.

“재세자[1994] 20호”, “국세발[1997]54호”, “국세합[2001]336호” “재세[2018] 164호” 참고.

2. 최신 기업소득세 및 증치세 세법 개정 내용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실시일	관련 규정
고정자산 가속감가정책 (상각연한 단축 또는 가속상각)	바이오약품, 전용설비, 철도·선박·항공우주 및 기타 운송설비, 컴퓨터·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 각종 측정기 제조업, 정보전송 및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업 등 6개 업종 의 기업이 새로 구입한 고정자산	전체 제조업으로 확대	2019.01.01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66호
소형박리기업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과세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 유효세율 적용	과세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부분은 5% 유효세율 적용, 과세소득이 10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인 부분은 10% 유효세율 적용,	2019.01.01- 2021.12.31	재세[2019]13호
구매한 중고차 판매 시 증치세 세율	매출액=세금포함 매출액/(1+ 3%) 납부할 증치세=매출액* 2%	매출액=세금포함 매출액/(1+ 0.5%) 납부할 증치세=매출액* 0.5%	2020.05.01- 2023.12.31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 17호 및 국가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9호
일반납세자에서 소규모 납세자로 전환등기	2019.12.31일 전 전환등기 가능	2020.12.31일 전 전환등기 가능	2020.04.23	국가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9호
매입세액 인증기한 취소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360일 내에 인증	인증확인·감사대조·공제신고 기한을 취소	2020.03.04	국가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45호
매입세액 추가 공제	생산성 서비스(우정서비스·전신서비스·현대서비스) 및 생활성 서비스업 납세자는 당기 매입세액의 10% 추가 공제 가능	생활성 서비스업 납세자는 당기 매입세액의 15% 추가 공제 가능 생산성 서비스업 납세자는 당기 매입세액의 10% 추가 공제 가능	2019.10.01- 2021.12.31	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87호

3. 코로나 관련 세무 지원 정책

■ 기업소득세

NO.	내역	관련 규정
1	방역물품 생산기업의 새로 구입한 관련 설비 는 감가상각 필요 없이 일회적으로 손금산입 하도록 허용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8호
2	전염병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은 교통운송·요식·숙박·관광 (여행사 및 관련 서비스, 관광명소 관리) 업종 기업의 2020년도 발생한 결손금 보전 연수를 5년에서 8년으로 연장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8호
3	기업이 공익성 단체나 현금 이상 정부기관을 통하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사용하는 현금과 물품을 기부할 경우, 소득세과세표준 계산시 전액 공제 허용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9호
4	기업이 신종코로나 예방치료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사용하는 물품을 직접 기부 할 경우, 소득세과세표준 계산시 전액 공제 허용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9호

상기 정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종료일은 전염병 상황에 따라 별도 공지

3. 코로나 관련 세무 지원 정책 (계속)

■ 증치세

NO.	내역	관련 규정
1	방역물품 생산기업은 2019년 12월 31일과 비교할 때 신규 증가한 이월공제세액 전액을 환급 신청 가능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0년 제8호
2	방역물품 운송서비스, 대중교통 운송서비스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민에게 생필품 택배수취/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수입에 대하여 증치세 면제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0년 제8호
3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공익성 단체와 정부기관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 신종코로나 예방치료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사용하는 물품을 무상 기부할 경우, 증치세, 소비세, 성건세,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비부가 면제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9호
4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세율 우대: 호복성: 3%→면제, 기타 지역: 3%→1%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13호,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24호

상기 정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종료일은 전염병 상황에 따라 별도 공지

4. 기업청산

■ 청산의 업무흐름



4. 기업청산(계속)

■ 청산 주요 이슈

	내용	해당여부 확인
세무국	2면3감 기업소득세와 지방세 반환	과거 기업소득세와 지방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은 후 청산함에 따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감면 받은 부분반환
	이전가격조사	과거연도 관계사거래로 인한 소득이전에 대하여 세금 징수
	잔존재고 및 고정자산 매각	고정자산: 2009년 이전 구입분은 2% 증치세 납부; 2009년 이후 구입분은 13%의 증치세 발생 비정상손실 재고자산은 13%의 증치세 발생 <i>원칙: 기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에 따라 증치세 납부액이 발생함</i>
	부동산 양도	증치세, 토지증치세 등 발생
세관	수입설비의 면세혜택 반환	해외로부터 설비를 면세로 수입한 것이 있을 경우 중국 내 매각 또는 폐기 시 동 면세부분을 반환(5년 관리기간 이내)
	가공무역용 원재료 수책핵소	가공무역을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수책핵소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핵소를 완료하지 못한 부분은 내수판매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
기타	노동분쟁, 경제보상금 등	

별첨. CTAC 한국서비스팀

CTAC 한국서비스팀은 다국적 국제조세전문 자문그룹으로 중국 상해, 베트남 호치민, 베트남 하노이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고객에 적합한 최고의 이전가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밖에 기업인수합병, 회계 및 세무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사무실

TEL: +86 21 6406 6403

EMAIL: ilchung.kim@ctacgroup.com

ADD: Room 106, B1 floor, Tower B, Hongqiao green valley plaza, No.588 Shenchang road, Minhang district, Shanghai PRC(201106)

Website: www.ctacgroup.co.kr

베트남 호치민 사무실

TEL: +84 28 5416 5653

EMAIL: ilchung.kim@ctacgroup.com

ADD: 7th fl., Saigon Paragon Building, 03 Nguyen Luong Bang str., Tan Phu ward, dist 7, HCM.

Website: www.ctacgroup.co.kr

베트남 하노이 사무실

Tel : +84 24 6282 2968

EMAIL: ilchung.kim@ctacgroup.com

ADD: Room 05, Floor 13, Cham Vit Tower, 117 Tran Duy Hung, Cau Giay District, Hanoi.

Website: www.ctacgroup.co.kr